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560호
------------	-------

제출년월일 : 2004. 12.
제 출 자 : 김포시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동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읍·면 지역은 향후 지역여건에 따라 교통량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추어 추진코자 하며
-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등)으로 인한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의 노상주차장은 상가·주민자율조직 및 거주자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3%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며
-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고자함.

□ 주요골자

- 가. 동지역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신설(안 제2조)
- 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신설(안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 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제18조 제1항)
-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안 별표 1)
-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안 별표 3)
- 바. 공공시설의 주차장 유료화 개정(안 조례 제396호 부칙 제1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2004.11.11. ~12. 6.)결과 의견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김포시주차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0조의 주차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가족공원, 등지역의 공공시설(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함)
4.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다만, 노상주차장에 한함)
5.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김포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제8조제2항중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을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 하고, “수의계약”을 “시장이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를 제1항 제2호의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396호(2002. 8. 20) 김포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1항중 단서조항 “다만,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가족공원을 제외한 공공시설의 주차료징수에 관한 규정은 시행 규칙을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실 · 과 · 소		교 통 과
입 안 자	실 · 과 · 소장 직위 · 성명	교통과장 이 정찬
	담 당 직위 · 성명	교통시설담당 차 원석
	담 당 성명 · 전화	이 강 제 (행정 2817)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기본(30분)	30분이후 2시간까지	2시간초과	기본(30분)	30분이후 2시간까지	2시간초과	1일요금	월정기요금	
		1구획당 10분기준	1구획당 10분기준		주 간	야 간			
1급지	600원	200원	400원	600원	200원	400원	6,000원	60,000원	5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500원	35,000원	25,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1급지 : 통진읍·고촌면·양촌면·김포1동·김포2동·사우동·풍무동 지역
 - 나.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김포시 전 지역
 - 다. 1급지 및 2급지 지역안의 시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가족공원 기타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주차1회당 소형차(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및 2톤미만 화물) 1000원, 중형차(13인승 이상 30인승미만 승합차 및 2톤이상 4톤미만 화물차) 1500원, 대형차(30인승이상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 2000원으로 한다.
4. 주차시간
 - 가.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 나.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24시간
 - 다.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4월~10월 : 08:00~20:00
11월~ 3월 : 09:00~19:00
5. 주차요금의 특례
 - 가. 자가용 10부제운행,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형소형승용차(배기량800cc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상이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라.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마. 자전거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바. 시 및 사업소·동면 소속의 관용차량 및 타 기관의 차량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사. 시·동면 주관 행사에 동원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아.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자.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노상주차장의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 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 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m ² 당 1대
4. 단독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m ² 를 초과하는 1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신·구조문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 까지	초과 (1구) 회당 30분 기준)	2시간 까지	초과 (1구) 회당 30분 기준)	2시간 까지	초과 (1구) 회당 30분 기준)	1일 요금	주간		야간	기본 (30분)	30분이후 2시간까지 1구회당 10분기준)	2시간 초과	기본 (30분)	30분이후 2시간까지 1구회당 10분기준)	2시간 초과	1일 요금
1급지	600원	1,200원	600원	1,200원	6,000원	60,000원	50,000원		600원	200원	400원	600원	200원	400원	6,000원	60,000원	50,000원
2급지	300원	600원	300원	600원	3,500원	35,000원	25,000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500원	35,000원	25,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회는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회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회의 수에 따라 정수한다. 3.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통진읍·고촌면·양촌면·김포1동· 김포2동·사우동·풍무동 지역 나.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김포시 전 지역 다. (생략)								1. ----- 2. ----- ----- ----- 3. ----- 가. ----- ----- 나. ----- 다. (현행과 같음) 4. 주차시간 가. ----- 10분 ----- 10분 ----- -- 나.(현행과 같음) 다.(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설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설치기준</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 위락시설</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70m²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100m²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3. 제1종 균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135m²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td><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130m² 초과 20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²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²를 초과하는 130m²당 1대를 더한 대수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m²당 1대(다만, 가구(세대)당 1대에 미달시 가구(세대)당 1대이상) </td></tr> <tr> <td style="padding: 5px;">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td><td style="padding: 5px;">전용면적 85m²당 1대 (다만, 세대당 1대 미달시 는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td><td style="padding: 5px;">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7. 기타 건축물</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200m²당 1대</td></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m ² 당 1대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130m² 초과 20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²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²를 초과하는 130m²당 1대를 더한 대수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m²당 1대(다만, 가구(세대)당 1대에 미달시 가구(세대)당 1대이상)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전용면적 85m ² 당 1대 (다만, 세대당 1대 미달시 는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p>【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설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설치기준</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 위락시설</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70m²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100m²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3. 제1종 균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135m²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4. 단독주택</td><td style="padding: 5px;"> <p>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m²초과 15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m²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m²를 초과하는 100m²당 1대를 더한 대수</p> <p><삭제></p> </td></tr> <tr> <td style="padding: 5px;">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td><td style="padding: 5px;">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td></tr> <tr> <td style="padding: 5px;">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td><td style="padding: 5px;">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td></tr> <tr> <td style="padding: 5px;">7. 기타 건축물</td><td style="padding: 5px;">시설면적 200m²당 1대</td></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m ² 당 1대	4. 단독주택	<p>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m²초과 15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m²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m²를 초과하는 100m²당 1대를 더한 대수</p> <p><삭제></p>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m ² 당 1대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130m² 초과 20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²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²를 초과하는 130m²당 1대를 더한 대수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m²당 1대(다만, 가구(세대)당 1대에 미달시 가구(세대)당 1대이상)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전용면적 85m ² 당 1대 (다만, 세대당 1대 미달시 는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m ² 당 1대																																
4. 단독주택	<p>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m²초과 15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m²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m²를 초과하는 100m²당 1대를 더한 대수</p> <p><삭제></p>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시설면적/100m ²)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시설면적/150m ²)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 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시설면적/200m ²)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m ² 초과 : 1대에 150m ² 를 초과하는 1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m ²)/100m ²)]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정원/100)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비 고

1. ~ 9. (생략)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560
------------	-----

제안년월일 : 2004년 12월 14일

제 안 자 :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광식

1. 수정이유

-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 1 주차요금의 특례조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타 조례와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별표1 5에 차목을 신설함.

2. 주요골자

- 별표 1중 제5호 주차요금의 특례 자목의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로 고부착 취재차량)”을 “출입 언론기관 차량(관리자가 인정한 차량에 한한다.)”로 한다
- 별표 1 제5호 주차요금의 특례 차목에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 제27조의 모범 자원봉사자의 우대 조항을 신설한다.

김포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김포시주차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 5호 차목에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을
“출입 언론기관 차량(관리자가 인정한 차량에 한한다.)”로 한다.

안 별표1 5호 차목에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해 선정되는
모범자원봉사자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p> <p>5.주차요금의 특례 가 ~ 아 (생략) <u>자.출입</u>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은 ----</p> <hr/>	<p>[별표 1]</p> <p>5.주차요금의 특례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현행과 같음)</p> <p>(신설)</p>	<p>[별표 1]</p> <p>5.주차요금의 특례 가 ~ 아 (개정안과 같음) <u>자.출입</u> 언론기관 차량(관리자가 인정한 차량에 한한다.)은 ----</p> <hr/> <p><u>차.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되는 모범자원봉 사자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u></p>